

# 자본시장법 시행 전용메뉴 FAQ

2009. 02.



금융감독원

< 목 차 >

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	1
2. 금융투자회사의 상호 .....	6
3. 금융투자회사의 부수·겸영업무, 약관 .....	7
4. 이해상충방지체제 .....	9
5.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	10
6. 신용거래·공매도 .....	11
7. 금융투자상품 .....	13
8. 투자자 구분(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	15
9. 투자권유 .....	16
10. 기업공시제도 .....	28
11. 불공정거래행위금지제도 .....	35

# 자본시장법 시행 전용메뉴 FAQ

## 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 1-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 금융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인가(본인가)를 받기 전에 미리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3개월(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 (예비)인가신청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1·2호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1-2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요건, 인력요건, 물적설비요건,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저 자기자본은 영위하고자 하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요건 요약>

- 법인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금융기관,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 자기자본 : 인가업무단위에 따라 상이<자본시장법시행령 별표1 참고>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기자본은 50%감액
- 인력 요건 :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전문인력을 적절히 확보하고 배치할 것
- 물적 시설 요건 :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대주주 요건 : 금융기관, 국내법인, 외국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요건 규정(구체적인 요건은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3 참고)
- 사업계획 요건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내부통제기준, 정보차단장치)를 갖출 것

### 1-3 ELS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ELS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일종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1-4 펀드판매도 금융투자업인지?

펀드판매도 금융투자업에 해당합니다.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펀드 판매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된 후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1-5 펀드를 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금융위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운용하고자 하는 펀드의 종류에 따라 최소자기자본 및 최소 운용인력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 인가요건 요약>

- 법인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금융기관,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 자기자본 :
  - 종합(모든 펀드) : 80억원 이상
  - 증권 펀드 + 단기금융 펀드 : 40억원 이상
  - 부동산 펀드 : 20억원 이상
  - 특별자산 : 20억원 이상
-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요구자기자본은 50%감액
- 인력 요건 :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 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을 적절히 확보하고 배치할 것
- 물적 시설 요건 :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대주주 요건 : 금융기관, 국내법인, 외국법인, 개인으로 구분하여 요건 규정(구체적인 요건은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3 참고)
- 사업계획 요건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내부통제기준, 정보차단장치)를 갖출 것

#### 1-6

#### 집합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최소 운용인력은?

집합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최소 운용인력은 신청하고자 하는 업무 단위에 따라 다르며, 최소 필요 운용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업무 단위 및 투자자 종류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종합	일반, 전문투자자	5	3
	전문투자자	3	2
증권, 단기금융	일반, 전문투자자	4	0
	전문투자자	2	0
부동산	일반, 전문투자자	2	3
	전문투자자	1	2
특별자산	일반, 전문투자자	3	0
	전문투자자	2	0

※ 동일인이 두가지 자격에 해당될 경우 중복계산할 수 있음

**1-7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요건은?**

- ①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등록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출 것
  - 투자자문업 5억원, 투자일임업 15억원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 20억원
- ②등록단위별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 투자자문업 :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 투자일임업 :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3인 이상(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간 전문인력의 복수 산정을 인정하지 않음)
- ③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주주·임원이 관련 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 ④내부통제기준 등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1-8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시험 합격자, 또는 일정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은 협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9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에 대해 복수자격을 인정해 주는지?**

자본시장법상 자문업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일임업의 경우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전문 인력의 명칭 및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영위할 경우 총 3인을 확보해야 함)

1-10

**투자자문사로 등록하면 M&A중개나 컨설팅 업무 등의 수행이 가능한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및 대리 업무는 투자자문·일임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업무는 기업금융업무로서 투자중개업·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1-11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한 신고 절차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자산운용서비스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고수리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 서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감독법규 - 현행 법규안내 - 금융투자관련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內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12

**투자권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1-13** **자본시장법에서 펀드 등록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등록절차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자산운용사는 등록신청서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자산운용서비스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1-14** **자본시장법에는 사모M&A 펀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본시장법은 사모M&A 펀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용되던 사모M&A펀드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28조제1항에 의해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운용이 가능하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사모M&A 펀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2** **금융투자회사의 상호**

**2-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현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투자'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특정 상호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38조).

2-2

**은행에서도 펀드를 판매하는데 은행도 금융투자회사인지?**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과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고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겸영금융투자회사로 분류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 제22조)

3

### **금융투자회사의 부수·겸영업무, 약관**

3-1

**그동안 증권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 업무보고서상 보고로 가능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수업무를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에 업무개시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회사의 건전 경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당해 부수업무의 제한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3-2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던 부수업무를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도 영위할 수 있는지?**

실제 영위하지 않았던 업무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에 사전 신고 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부수업무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에 의해 시행 후 1월내 사후 보고 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3-3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이하 “CD매매·중개업무”)”는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부수업무였는데, 자본시장법에서도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원화로 표시된 CD 매매·중개업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에 해당하며,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0조, 시행령 제43조제5항) 다만, 외화로 표시된 CD 매매·중개업무의 경우 외화로 표시된 CD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금융투자매매업 및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3-4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차이는?**

겸영업무는 금융투자업 이외의 다른 금융업무로서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는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0조,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부수업무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그 종류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수업무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3-5

**증권사의 신용공여업무, 자금이체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신용공여업무와 자금이체업무는 금융투자업 이외의 다른 금융업무로서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공여업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서 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한 겸영업무이며, 자금이체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한 겸영업무입니다.

3-6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증권회사의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CMS서비스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추심이체로서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해당하며, 동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법정 겸영 업무에 해당합니다.

3-7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를 신고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겸영업무는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를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투자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5호> 서식에 의해, 겸영업무는 별책서식 1 <제4호> 서식에 의해 사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3-8

**자본시장법 시행 후 약관은 어디서 심사하는지?**

종전과 같이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48조, 시행령 제30조)

## 4

### 이해상충방지체계

4-1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간 임직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의 임직원 겸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확인절차는 자본시장법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겸직 확인신청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증빙서류(준법감시인 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5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5-1** 기존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월급여의 1/2 범위내에서 증권저축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가 가능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거래금액의 기준이 없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지?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증권거래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달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거래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에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매매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2** 임직원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사에도 해당되는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여 임직원 매매관련 제한을 받는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합니다.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집합투자증권 또는 신탁을 판매하는 임직원 등이 포함)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유업무로 보험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임직원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3** 임직원 매매와 관련하여 회사에 통지하고 가족 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자본시장법 제63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6

## 신용거래 · 공매도

6-1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의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한 융자(대출)가 불가능한지?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방법을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을 통해 주식 등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대출 만기 이전까지는 종전 증권거래법에 따라 거래가 유효하므로 증도 상환할 필요는 없으며 만기전이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타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2

신용공여 이용시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신용공여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요청되는 추가담보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대용가격 기준에서 원담보와 같이 시가평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상 대용가 평가는 시가대비 70%~8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로 적용할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6-3

**신용공여 이용시 담보부족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임의상환 방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금융투자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지체없이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고객과 약관 등을 통해 사전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요구 및 징구 없이 필요한 수량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회사의 선택적 사항으로 모든 증권사가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회사별로 이러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비교한 뒤 사전합의에 대한 확인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6-4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에서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공매도 인지 여부와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그 해당사실을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주문 투자자는 동 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감독당국 등에 통보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7

## 금융투자상품

### 7-1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이란?

자본시장법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투자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일반적으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7-2 보험상품이나 예금도 투자성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보험상품과 예금상품도 투자성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투자성 있는 예금'과 '투자성 있는 보험'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상 몇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7조). 한편,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 7-3 변액보험상품이 투자성 있는 보험에 해당하는지?

변액보험상품이라도 최저보증옵션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인 경우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7-4

**주식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해당하는지?**

주식 거래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며 증권에는 주식, 채권 등 종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뿐 아니라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지분, 기업어음증권 등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포괄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7-5

**기업어음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지급을 대행하는 은행(은행법 제2조의 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를 인쇄하여 교부하는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만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 다만, 종전 증권거래법과 달리 발행주체, 만기 및 금액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7-6

**원금보장형 ELS, 원금보장·비보장 ELD가 금융투자상품인지?**

ELS는 원금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 규정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므로 금융투자상품입니다. ELD(Equity Linked Deposit)는 예금으로 원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8 투자자 구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 8-1 전문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그 범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기관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8-2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국내 주권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가 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4호).

### 8-3 국내 증권시장과 해외 증권시장에 모두 주권을 상장한 국내 법인은 전문투자자인지?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 의사 통지가 없는 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4호).

### 8-4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은 전문투자자인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은 모회사인 외국법인과는 별개로 국내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의 경우 본점인 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외국법인이 전문투자자인 경우 국내지점도 전문투자자로 봅니다.

8-5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농·수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전문투자자이나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농·수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일반투자자입니다. 이들 기관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펀드 판매)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일반투자자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9

### 투자권유 - 금융위·금감원·협회의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9-1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의 적용범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상품설명,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상담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9-2

**투자권유시 전문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문투자자와 금융상품매매와 관한 상담시 및 콜센터 직원들이 위험고지에 대한 확인을 노력함에 있어서도 전문인력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투자권유는 '특정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투자자와의 상담 또는 콜센터 직원의 확인업무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고 단순고지, 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3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고객이 HTS를 통하여 주식의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에도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HTS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4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고객이 작성한 '일반고객 투자목적 기재서'에 기초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존의 투자목적 기재서가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 지식수준, 재산상황, 손실감내도 등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9-5

**일반투자자인 법인고객의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방법은?**

일반투자자인 법인고객의 투자정보 확인은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법인에게 적합한 투자정보 확인서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9-6

**고객에게 동시에 복수의 펀드를 권유하는 경우, 펀드별로 고객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동일 고객이라도 투자예정기간 및 투자자금 등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펀드별로 투자목적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복수 펀드에 대하여 투자예정기간 및 투자자금 등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7 계좌개설시 반드시 고객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투자권유 없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단순히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객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9-8 CMA 가입시에도 고객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투자권유 없이 고객이 CMA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고객 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CMA 계좌에 입금하면 MMF 또는 RP등의 금융투자상품을 자동매수하게 되므로 CMA 가입 권유는 금융투자상품 매수 권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고객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9 주식에 대한 투자권유시마다 고객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동일인이라도 투자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객정보를 이미 확인한 계좌에서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단기간 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권유시마다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적합성 원칙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권유시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객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투자목적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도 투자목적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고지토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9-10**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확인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9-11**      **[적정성원칙]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일반투자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물·옵션, ELW는 매매의 적시성이 중요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마다(HTS 포함) 고객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파생상품 등(파생상품, 파생펀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투자권유 없이 HTS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객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HTS 시스템 매매 이전에 계좌개설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후 매매시마다 정보를 재확인하는 문제는 [FAQ 9-9]와 동일한 방식의 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9-12**      **고객 투자성향 분석결과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한지?**

파생상품등이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을 경우 ①거래를 거절하거나 ②고객이 거래를 원할 경우 부적합 사실 및 위험등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투자위험성이 높으므로 향후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없도록 고객의 의사에 의한 거래 시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13**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펀드(파생상품 펀드 제외)를 매수하는 경우 고객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HTS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일반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유를 원치 않는 단순 펀드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권유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해야 합니다.

\*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그러나,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에는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부적절한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9-14**      **온라인상(또는 ARS 인증 방식)에서 고객이 직접 작성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근거로 해당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라인(또는 ARS 인증방식)으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투자권유 할 수 있습니다.

**9-15**      **다른 금융기관에서 작성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작성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를 위해서는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파악한 투자자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9-16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규정에 따르면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46조의 적합성 원칙과 차이가 무엇인지?**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며, 제46조의2 '적정성 원칙'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판매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덧붙여, 고객정보 파악결과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17

**파생상품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적정성의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의2)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파생상품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고지를 하는 등 파생상품등의 거래에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규정입니다.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파생상품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18

**고객이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권유가 가능한지?**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고객은 정보 미제공 고객에 해당되므로 투자권유가 불가능합니다.

**9-19** **펀드환매를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의 확인 및 해당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환매권유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도의 권유는 이미 고객이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초 펀드 가입시와 같이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투자등급을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자금의 성격, 투자예정기간 등 매도권유 판단에 필요한 고객 정보 확인으로 가능하며,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환매수수료, 환매시 위험 등) 등 필요한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매 권유시에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은 최초 투자권유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20** **계좌가 없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담만 받을 경우에도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고객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설명이나 상담시에는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9-21** **유선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 지거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단순 주문 수탁시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자금이체 및 단순주문 수탁은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고객정보 확인의무가 없습니다.

**9-22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정급부(DB)형의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이 사업자를 상대로 적합성 확인 및 설명의무가 있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수익자인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고객정보 확인을 하고 적합한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9-23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품설명을 할 수 있는지?**

고객에게 설명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성향에 비하여 고위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상품설명이 가능합니다([FAQ 9-1] 참조)

**9-24 일반투자자에게 RP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RP거래의 권유는 증권에 대한 매매의 권유에 해당되므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9-25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또는 환매를 문의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고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추가매수 또는 환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객의 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고객의 성향 파악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 펀드 가입시와 같이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투자등급을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자금의 성격, 투자예정기간 등 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고객 정보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시황설명 등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투자권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고객의 정보확인 의무는 없습니다.

9-26

**투자권유시마다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투자설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채권, 선물·옵션, ELW 등과 같이 설명서가 해당 유형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최초 투자권유시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면 이후 투자권유시마다 설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ELS·펀드 등과 같이 설명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투자권유시마다 해당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설명서 교부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자본시장법상의 '설명 의무'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위험도 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행위(설명 의무)는 필요

9-27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추가로 매수하거나 환매 후 다시 해당펀드를 매수할 경우에도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최초 펀드 가입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투자설명서를 추가적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9-28

**투자권유 대행인이 고객의 투자목적 및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의 투자목적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9-29 투자권유대행인도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고객의 투자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정보 확인은 투자권유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므로 투자권유대행인도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고객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9-30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9-31 펀드등급제가 시행되는데 펀드의 위험분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펀드 성격과 구조 및 위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 표지상단에 표시한 펀드 투자위험등급(1~5등급)에 따라 분류합니다.

**9-32 펀드랩에서 펀드를 교체할 때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펀드랩의 경우 고객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일임업자가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펀드를 교체할 때마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새로이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9-33 고령자는 장내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되는지?**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상품 직접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초보 고령투자자)에게 고위험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보 고령투자자가 투자를 원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권유없이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절한지 확인하고 만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34 선물·옵션거래시스템에 의한 거래에도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의 판매의 개념에는 “중개”가 포함되므로 선물·옵션거래시스템에 의한 거래에도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위탁자 계좌 개설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반드시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 개설 이후 거래시에는 거래시마다 고객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주기에 따라 고객정보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35 금융투자회사간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에도 표준투자 권유준칙,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등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업회사간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거래시에도 자본시장법 제28조의2에 의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36

**법에 따라 지정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어떻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 대한 지정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금융감독원(자본시장서비스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업무자료-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업무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37

**개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위험회피 목적거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험회피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위험회피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업무자료-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업무자료”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8

**해외펀드에 대한 선물환계약 체결시 체결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해외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선물환계약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환계약의 체결시점에 보유한 펀드의 평가금액내에서만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10

## 기업공시제도

10-1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변경된 내용은?**

- ① 증권이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계약 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이 새로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
- ② 모집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소액공모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축소(기존 20억원)
- ③ 신주발행이 수반되는 합병등의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④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교부해야 함
- ⑤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도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광고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10-2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포함된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예; 주주수 500인 이상의 외감법인 등)에는 자본시장법 시행('09.2.4.) 이후 최초 도래하는 분·반기 또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 결산기별 최초 사업보고서등 제출시점 안내

구 분	최초 보고대상	제출시한
3월말 결산	'0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3월말 + 90일
6월말 결산	'08회계연도 3분기보고서	3월말 + 45일
9월말 결산	'08회계연도 반기보고서	3월말 + 45일
12월말 결산	'09회계연도 1분기보고서	3월말 + 45일

법 시행과 관계없이 발행인의 행위에 의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되는 경우(예; 증권의 모집·매출, 신규상장(IPO)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159③)

10-3

**합병가액 산정시 주당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부(負)의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지?**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A사는 B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뿐만 아니라 B사의 사업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므로 B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B사의 자산가치는 (+)의 수치를 나타내지만 수익가치는 (-)의 수치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B사가 즉시 청산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익가치를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으나, 계속기업을 가정할 경우 (-)의 수익가치가 향후 (+)의 자산가치를 훼손하게 되므로 (-)의 수치까지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의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이 수치를 그대로 합병가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4

**합병등의 경우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합병승인주주총회의 참석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위해서는 주주명부 폐쇄일 혹은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함께 합병등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되기 이전에 취득 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혹은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 하였지만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5)

**10-5**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청구권자가 그 요건을 갖추어 매수를 청구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주식양도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가 이루어지면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어떤 계약이든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청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교부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목적에 한하여 처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주식수와 실제 교부할 주식수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진퇴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실효)된 경우와 행사권자가 실제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행사에 대비하여 취득한 주식과 실제 교부할 주식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잔여분을 다른 목적(임직원에게 대한 상여금·공로금 지급, 시장매각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가안정 또는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목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0-7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13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자본시장법 §165의2 및 §165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가 현재 직접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보유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8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요계약 체결, 보유형태 변경시에도 보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투자 목적의 대량보유자도 주요계약 체결시 등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자본시장법에서 신설된 변경보고의무(주요계약, 보유형태 변경)는 경영참가목적이 있는 대량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투자목적의 대량보유자는 이 경우 보고의무가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10-9** 담보계약과 관련한 주식등의 수가 정미(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한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지?

담보제공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주식등의 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10-10** 대량보유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0.5%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도함과 동시에 0.5%에 해당하는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0.5%의 지분 변동과 0.5%의 주요계약 체결이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변동·변경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보고해야 하는지?

변동보고와 변경보고는 그 보고취지가 다르므로 변동 지분과 변경에 해당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보고의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 변동 지분율이 1%이상이거나 변경에 해당하는 지분율이 1%이상인 경우에 보고하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10-11** 대량보유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0.7%, 0.3%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5%보고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므로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담보제공한 지분율을 합산하여 1%이상이면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10-12**    **상장사 A의 미등기 임원인 甲은 A사의 최대주주인 乙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乙이 5%보고할 경우 甲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A사의 등기임원은 A사 최대주주인 乙과 특수관계인이지만 미등기 임원인 甲은 乙과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등기임원 甲과 최대주주 乙 사이에 공동보유관계가 성립한다면 甲은 乙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므로 乙의 5% 보고서 甲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10-13**    **단순투자목적 보유자의 보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단순투자목적 보유자라도 기관투자자가 아니면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모든 단순투자목적 보유자의 보고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④)

**10-14**    **자본시장법에서 5%시 장내매매 기준일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변경하였는데 임원·주요주주보고도 체결일로 변경되었는지?**

임원·주요주주보고의 장내매매 기준일은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결제일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10-15**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이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소유한 특정증권등이 없는 임원은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보고하면 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②)

10-16	<p><b>자본시장법에서 주요주주는 소유한 CB, BW 등 특정증권등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B, BW 등도 포함하여 주요주주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소유)을 판단해야 하는지?</b></p>
-------	--

주요주주 요건은 의결권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이 아닌 CB 등은 보고대상 증권일 뿐이지 주요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자본시장법 제9조①2호, 제173조)

10-17	<p><b>사실상 임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가지고 있는 주식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는지?</b></p>
-------	--

조합원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특정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은 특정 조합원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②)

10-18	<p><b>'09.2.4. 주식 1,000주, CB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임원이 2.10.(결제일) 주식 1,000주를 매수한 경우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은?</b></p>
-------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10. 매수분은 자본시장법을 적용(5영업일 이내보고)받아 2.17.까지 보고해야 하므로 2.17. 보고시 2.4. 소유상황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현재 소유한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시행일로부터 1개월 후인 3.3.까지 보고하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10-19**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하는 경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언제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지?

권유행위와 관련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집공고일이 자본시장법 시행일(2.4.) 이전이면 증권거래법을 적용받아 권유행위를 하기 2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이면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5. 주총소집공고가 있었고 2.20.부터 권유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12.까지는 참고서류 등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감독당국 제출시한	D-5	(산정 제외)	(산정 제외)	D-4	D-3	D-2	D-1	권유 개시일[D]

\* 기간 산정시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1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11-1** 신설된 대량취득·처분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 대량취득·처분의 개념은 무엇인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취득·처분이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량취득·처분을 말합니다(시행령 제201조제3항)

- 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시행령 §154 ①)으로 할 것 (취득의 경우에 한함)
- ②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처분일 것
- ③ 그 취득·처분이 대량보유 보고대상(법 §147 ①)에 해당할 것

이중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두가지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합니다.(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4조)

- ① 100분의 10(발행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처분하는 주식등의 비율)
- ② 취득·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되거나(발행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특수관계인 및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변동비율

이는 경영권 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또는 경영권 분쟁 등에 수반한 대량취득·처분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으므로, 주요주주 산정 기준인 10%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 11-2 내부자거래 규제에서의 계열회사의 개념은 무엇인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25조제5항제4호).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됩니다.